최근의 여건 변화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 향후 정책방향

201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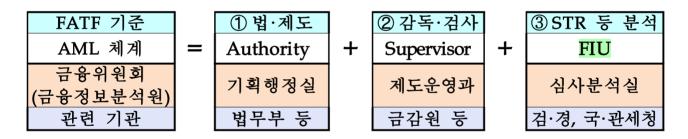
금 융 위 원 회 금융정보분석원

목차

I . 추진 배경	1
Ⅱ. 최근의 여건 변화	2
1. FATF의 포괄 범위의 확대·심화 /	2
2. 엄격해진 FATF 상호평가에 대응 (3
3. 미국 등 개별국가차원의 규제·재재 강화 4	4
Ⅲ. 금융정보분석원 향후 정책방향 !	5
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 !	5
2. 상호평가 대응 (6
3. AML/CFT 감독·검사·제재 ·····	7
4. 심사분석의 효율화 {	8
[참고1] FATF 개요	1 2 3

Ⅰ. 추진 배경

- □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이하 "AML") 체계를 효과적으로 안착·발전시키기 위해 구체적·세부적인 국제기준을 도입
 -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OECD 회원국 중심으로 35개 국가 등이 정회원으로 가입
 - ** Anti-Money Laundering / Counter-Financing of Terrorism
 - 특히, 금융부문에 불법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에게 CDD(고객확인), STR(의심거래보고) 등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부여
 - * 가상통화 관련 가이드라인(1.30일 시행)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문지기 역할을 강화한 사례
 - ⇒ 각국은 FATF 국제기준의 이행을 위해 ① 법·제도, ② 감독·검사,③ STR 등 분석 담당 기관을 설치·운영
 - AML 체계의 기본이 되는 CDD, STR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금융 회사등을 감독·검사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



- * 일반적으로 금융정보분석기구(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하는 의심거래보고(STR) 등을 ⁸분석하여 검·경 등 법집행기관에 <u>제공</u>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의미(美濠 등)
- 반면, 금융정보분석원(우리나라 FIU)은 [●]법·제도, ^❷감독·검사 업무도 담당
- □ 금융정보분석원은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국제정합성**을 제고하고 AML 체계의 근간인 법·제도 및 감독·검사를 단계별로 강화*할 필요
 - * 대통령께서는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4.18)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이 반부패 기관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해나갈 것을 지시
- ☆ 준법성 규제 및 반부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해나갈 계획

Ⅱ. 최근의 여건 변화

1 FATF 포괄 범위의 확대·심화

- □ FATF는 2000년대 이후 **테러자금조달(TF)·핵확산금융(PF)**에 대한 대응 등을 계기로 기능이 크게 확대^{*}
 - * ('89)마약범죄 → ('96)조직범죄 → ('01)테러자금조달 → ('12)핵확산금융
 - 자금세탁 관련 범죄와 연관된 금융거래의 STR 보고 중심 → TF, PF와 관련된 **일체의 자금흐름**, **송금**, 지급결제에 대한 감시로 확대
 - 테러뿐 아니라 이란·북한 등 핵확산국가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활용
- □ FATF의 적용대상도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수단 및 기관 → 지급· 결제, 신종금융수단 및 비금융기관으로 확대
 - 전자금융, 가상통화 등 지급서비스업^{*}의 신기술을 활용한 거래 방식도 규제대상에 포함
 - * 미국·EU는 이미 송금, 자금이체 등을 업으로 하는 지급서비스업을 규율하고 있고, FATF도 MVTS(자금·가치 이전 서비스업)에 대한 권고(14조)를 마련
 - 다만 최근 FATF는 금융회사·감독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FinTech, RegTech*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
 - * Regulation과 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금융회사는 규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준수하고, 당국은 보다 효율적으로 감독·규제하기 위해 IT 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통칭
 -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16.4월), 전문직의 자금세탁 범죄 등을 계기로 법인·신탁 등의 실제소유자 및 非금융특정직에 대한 AML 규제 강화
 - * 파나마 로펌이 보유한 약 1,150만 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을 통한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 정보 포함

2 엄격해진 FATF 상호평가에 대응

- □ FATF는 '12년 이후 평가기준 및 후속조치를 강화
 - FTAF 권고사항의 법적·제도적 이행을 평가하는 '기술적 이행 (Technical Compliance)' 평가(40개 항목) 외에 제도가 실질적·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효과성(Effectiveness)' 평가(11개 항목)를 추가^{*}
 - * 평가 기준별로 4단계로 이행수준을 평가 → 하위 2단계로 평가된 항목의 숫자에 따라서 후속조치 수준을 결정
 - 아울러, RBA*(위험기반접근방식)를 제도 전반의 기본요소로 포함
 - * 위험을 평가하여 저위험에 간소화된 조치를, 고위험에 강화된 조치를 통해 대응
 - 상호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점검 절차 및 5년마다 실시하는 현장 실사(on-site)를 추가하면서 사실상 **평가를 상설화**

<최근 주요국의 FATF 상호평가 결과>

구분	국가	후속 점검 주기
정규 후속점검 (Regular Follow-up)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3개국	3년 (5년내 1회)
강화된 후속점검 (Enhanced Follow-up)	호주, 미국,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12개국	1~1.5년(5년내 3회)
ICRG 점검절차 (ICRG Procedures)	아이슬란드	4개월(매 FATF 총회시)

- □ 우리나라는 '19년중 **약 10년만**에 FATF 상호평가 절차*가 예정
 - * 수검일정 : '19년 상반기 : 서면평가 (이행보고서 제출 및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
 - ② '19년 하반기 : 현지실사(on-site) 및 평가초안 수정여부 협의
 - ③ '20.2월 : 한국의 상호평가 결과를 FATF 총회에 상정·논의 → 최종확정
 - **상호평가**를 우리나라 AML 체계를 **정비할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서에 따라 **충분한 준비***를 해나갈 필요
 - * 1 FATF 국제기준 및 평기방법론에 대한 적확한 이해, 2 국내 국제기준 이행수준을 상시 점검 3 법제도 개정·운용현황에 대한 근거자료 완비, 4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이행계획 시전준비
 - → 수검사례: ① (포르투갈) 수검기간('16.6~'17.11월)간 50,000시간 투입하여 8,118장의 자료 제출 ② (중국) 주관기관인 인민은행은 상호평기과 포함 40명의 전담인력 투입 중

3 미국 등 개별국가의 규제·제재 강화

- □ 최근 美 금융당국(뉴욕연방준비은행, 뉴욕금융감독청 등)은 **외국계은행 현지** 점포의 송금중계 등 거래 모니터링·내부통제 시스템을 중점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제재^{*} 부과
 - * '09년 이후 최근까지 미국내 외국은행 지점들에 대해 총 60건의 제재조치 (enforcement action)가 있었으며, 이중 47건은 벌금부과가 병행
 - 美 당국은 자금세탁방지규정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에 주안점을 두고 현장검사시 이를 엄격히 점검
 - 美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에서도 분야별 검사 후 결과를5개 등급으로 책정하며, 추후 검사시 등급하락・취약등급 여부등을평가하는 등 체계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제재에 활용
 - 1~1.5년 주기로 이전 검사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지속검토하고 '등급 하락' 또는 '미흡 평가'시 공식 제재 조치 부과
 - 美당국이 既지적사항 개선조치를 매년 점검함에 따라 은행들의
 컨설팅 및 신규 전문인력 채용 등 추가비용은 지속 증가 추세
- □ 한편 美 재무부·검찰은 **북한·이란** 등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융거래 혐의가 있는 금융회사의 국제금융시장 **퇴출** 조치도 적극 시행중^{*}
 - * '18.2.13일 대북제재 등 위반혐의로 라트비아 3위 은행인 ABLV은행을 美 금융망에서 퇴출시키는 규정안 발표 → 인출사태 발생 등으로 폐업 직면
- □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감독강화 기조**에 대응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

Ⅲ. 금융정보분석원 향후 정책방향

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 □ FATF 국제기준 및 현재 이행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ML/TF 위험도에 기반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
- < 금융부문 예시(특정금융거래정보법,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등) >
- □ 특정금융거래정보법령 개정 등을 통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 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
 - 고객확인의 대상이 되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금 세탁방지 의무의 수준을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선진화
 - * 관련 내용을 포함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됨(18.5.10일 보도자료 참조) (현행)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달러, 기타 2천만원 이상 거래 (개정) 전신송금 100만원, 카지노 300만원, 외국환거래 15,000달러, 기타 1,500만원 이상 거래
 -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등 **지급기능**을 수행하지만 AML 규제가 未도입된 업종의 ML/TF 위험성을 평가하고 적정한 **규제방안을 검토**
 -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
 - * 관련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이 旣 발의됨('18.3.21일,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 **특수목적법인·신탁** 등에 대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재점검
- □ 테러·확산금융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제도 등 **공중 협박자금조달금지법**('공협법') 등의 개정 필요성 검토
 - **지정대상자**의 금융거래제한 이외에도 **재산권 처분** 등과 관련하여 **운용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 국제기준은 UN 안보리가 테러·확산금융 등을 이유로 지정한 자의 금융거래 제한 등 자산 동결을 요구
 - 이에 따라 **공협법**은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을 금지하고, 금융위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

- < 非금융부문 예시(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
-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
 - 관세범죄, 환경범죄 등 FATF가 지정한 필수 전제범죄군의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이 되는 **전제범죄^{*}의 범위 확대^{**}** 추진
 - *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수익 발생의 전제가 되는 범죄로서 중대한 범죄를 열거
 - ** 관세법(세관신고 물품의 가격조작), 산지관리법(미허가 산지전용) 위반 등을 전제범죄에 추가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旣 발의됨('16.9.2일, 정부안)
 - **전문화·고도화**되는 자금세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회계사 등 非**금융전문직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방안을 검토·추진^{*}
 - * 관련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이 旣 발의됨('17.5.15일, 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 ㅇ 민사몰수제도 및 금융자산 동결제도 등의 도입 가능성 검토

2 상호평가 대응

- □ 범부처 차원에서 FATF 상호평가 수검자료 및 대응논리 발굴·추진
 - 기존 관계부처간 협의 채널 외에도 **고위급 회의체** 등을 활용하여 관계부처 협조를 도출
 - 상호평가 안건을 장·차관급 회의체에도 상정하여 법무부·대검 등 타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 방대한 자료작성 및 현지실사 등에 대비하여 시기별 추가적인 **대응방안** 마련
 - 검·경·국·관세청 등과 **협의채널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마련·추진
 - 금융권이 FATF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현지 실사(19.7월)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직원으로 구성되는 대응 T/F 등을 운영

3 AML/CFT 관련 감독·검사·제재 정비

- □ 각 업권 자금세탁방지 분야 검사 운영기준 및 제재기준을 정비*하여 업권 간 검사·제재의 일관성 확보
 - * AML 검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검사 및 제재규정」시행 예정(7월)
 - 검사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기관·임원·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별 부과기준을 구체화
 - 제재의 공정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FIU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검사와 정책의 연계를 강화
- □ 가상통화, 국제제재 이행, 법인-대표자간 거래 등 고위험 분야 및 취약업권에 대한 감독강화 등 **위험기반의 감독체계** 정비
 - * FATF의 주요 권고사항 중 하나로서 RBA(Risk Based Approach) 방식을 의미
 - 금융회사의 AML 제도운영을 실질적·세부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평가 - 검사 - 교육(개선)"이 연계·순환되는 체계로 개편
 - 관리감독이 취약한 상호금융업권(농협·신협 등)*에 대한 감독 강화
 - * 現 5개 상호금융중앙회 단독 검사권 보유 → 중앙회·금감원 검사권 병행 위탁 추진
- □ 최근 美 등의 국제적인 검사강화 기조에 대응하여 금융회사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검사를 강화**
 - 美 등의 AML 감독·제재 강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FIU·금**감원·** 금융회사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TF를 운영('18.6~8월)
 - 해외 감독당국의 주요 지적사항 및 개별 금융회사 자체 컨설팅 결과 취약점 등을 분석
 - 동 TF를 통해 감독방향을 의심거래 未보고 등 개별 위규 적발 중심에서 내부통제체계 미흡 등에 대한 개선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 해외점포 AML에 대한 본점차원의 관리감독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

4 심사분석의 효율화

- □ 중요 범죄의 조기적발을 위한 '전략분석^{*}' 기능 강화
 - * '12년 전략분석팀을 신설(검사 1명 및 팀원 3명)하여, 분석 테마를 설정하고 관련된 의심거래보고(STR) 유형·패턴을 분석하는 등 심층분석을 수행
 - 조세·관세·형사 전문분석관을 추가로 투입하여 주요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인 심층분석을 수행
- □ 법집행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
 -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질의 심사분석을 위한 정보공유 확대 방안을 발굴 추진
 - 해외 불법재산 환수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
- □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STR) 품질 제고
 - 기존에는 旣 보고된 STR에 대한 분석기법·시스템 개선에 치중해 왔으나, 금융회사가 보고하는 STR의 품질제고방안*도 개발·추진
 - * 법집행기관에 통보되는 분석자료는 금융회사가 보고하는 STR에 크게 의존 ('Garbage in, Garbage out')

□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 정교화되고 있는 불법재산 은닉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사분석 시스템 개발 및 정보처리 인프라 구축 추진

참고 1 FATF 개요

1. 설립 목적

- □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 (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 (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 * (주요 UN협약) 비엔나 협약('88, 마약),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UN협약('99), 팔레르모 협약('00, 조직범죄), 메리다 협약('03, 부패) 등
- □ FATF 설립 이후 관할 범위가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 조**달('01),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12) 등으로 **확대**
 - * 북한, 이란의 WMD (대량살상무기, Weapon of Mass Destruction) 자금조달에 대한 정밀금융제재 (Targeted Financial Sanction) 내용 포함

2. 주요 기능

-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의 이행 현황을 회원국간 상호평가(peer review)를 통해 평가·감독
 - * AML(Anti-Money Laundering) & CFT(Counter Financing Terrorism)
- □ AML/CFT 국제규범 미이행 국가를 선별하고 제재
-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수단 개발 등

3.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FATF 역할 강화

- □ 파리 테러('15.11월)를 계기로 G20, G7, UN 등 국제사회는 테러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을 강조
- □ **파나마 페이퍼스***('16.4월) 사건을 계기로 G20, G7, 반부패정상회의 에서 **실소유주** 관련 FATF 국제기준의 이행 요구
 - * Panama Papers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약 1,150만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조세 회피 및 재산은닉 정보 포함

4.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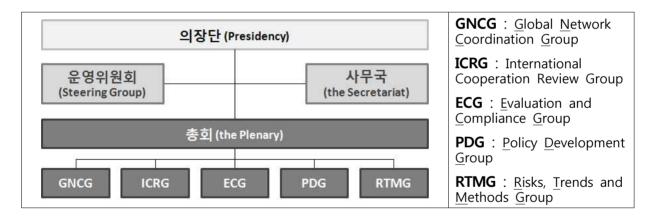
□ 회원 구성

○ **정회원**(35개국 + EC, GCC), **준회원** (FATF 산하의 9개 지역기구), **옵서버** (IMF, WB, UN 등 28개 국제기구)로 구성

< FATF 정회원 현황 >

지역	OECD 국가	非OECD국가	국제기구
유럽 (20)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러시아	European Commission
미주, 기타 (7)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 아르헨티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아태 (10)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중국, 인도,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계 (37)	26	9	2

□ 조직 구조



□ FATF 의장

- **의장**은 **FATF**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총회·운영위** 등 주재 ※ 신제윤 의장은 '14.7~'15.6 부의장직 수임 후, '15.7~'16.6 의장직 수행
- □ 총회 : FATF 최고 의사결정기구
 - FATF 국제기준 및 정책 방향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비정치적·기술적 성격^{*}을 중시함
 - * 다른 국가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국제기준 이행을 강제

참고 2 FATF의 특징 : 타 국제기구와의 차별성

- □ (부문) FATF 국제기준은 금융부문 및 사법부문으로 구성*
 - * FATF 국제기준(40개 권고사항) = 금융기관 등 대상 예방적 규제 + 시법부문의 억제적 규정
 - 특히 금융부분에서 FATF는 **준법성 규제 국제기구**로서 역할을 담당
 - FATF는 준법성 규제를 통해 건전한 금융질서(financial integrity)를 확립

국제기구	FATF	BIS(국제결제은행)·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 등	
규제 방식 준법성 규제		건전성 규제	
규제 부문 지급(자금이체) 등 자신		자산·부채 등	

- FATF는 개별업종의 규제 및 제도의 존재를 전제로, 송금·지급 부문에 대해 AML/CFT 의무를 부과하는 기능별(functional) 규제 방식을 채택
- FATF는 국제기준 중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기록보관에 대해서는 각 국이 법제화해야 함을 명시하는 등 중요성을 강조함
- □ (이행) FATF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국제기준(FATF standard)과 상호 평가방법서(Methodology)를 통해 확고한 이행력을 담보
 - **(기준)** FATF는 각 권고사항(Recommendation)별로 해석주석(Interpretive Note) 외에도 지침서(Guidance)* 등 구체적인 하위규정 등을 마련
 - * (예) FATF는 가상통화 정의, 규제 등에 대한 Guidance를 마련('14년, '15년)
 - **(평가)** FATF는 상세한 평가방법서(Methodology)를 바탕으로 회원국의 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후속점검 및 제재 조치** 부과
- □ 한편, 미국은 포괄적 이란제재법, 개별 금융기관 제재(방코델타아시아, 라트비아) 등 개별 국가차원에서 이란·북한 등에 대해 강력하게 재재

참고 3 FATF 국제기준 40개 항목

1.	2.	3.	4.	5.
Assessing risks and applying a risk—based approach	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Money laundering offence	Confiscation and provisional measures	Terrorist financing offence
위험평가와 위험중심 접근법의 적용	국가적 협력과 조정	자금세탁 범죄	몰수와 잠정조치	테러자금조달 범죄
6.	7.	8.	9.	10.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related to terrorism & terrorist financing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related to proliferation	Non—profit organizations	Financial institution secrecy laws	Customer due diligence
테러·테러자금조달 관련 정밀금융제재	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비영리조직	금융회사의 비밀유지 법률	고객확인제도(CDD)
11.	12.	13.	14.	15.
Record keeping	Politically exposed persons	Correspondent banking	Money or value transfer services	New technologies
기록보관	고위공직자 (정치적 주요인물)	환거래은행	자금 또는 가치의 이전 서비스	새로운 기법
16.	17.	18.	19	20.
Wire transfers	Reliance on third parties	Internal controls and foreign branches and subsidiaries	Higher-risk countries	Reporting of suspicious transactions
전신송금	제3자에 의한 고객확인	내부통제, 해외지점과 자회사	고위험 국가	의심거래 보고
21.	22.	23.	24.	25.
Tipping-off and confidentiality	DNFBPs: Customer due diligence	DNFBPs: Other measures	Transparency and beneficial ownership of legal persons	Transparency and beneficial ownership of legal arrangements
정보누설과 비밀유지	특정전문직: 고객확인	특정전문직: 기타 수단	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법률관계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26.	27.	28.	29.	30.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Powers of supervisors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DNFBPs	Financial intelligence units	Responsibilities of law enforcement and investigative authorities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감독기관의 권한	특정전문직에 대한 규제와 감독	금융정보분석원	법집행기관과 조사당국의 책임
31.	32.	33.	34.	35.
Power of law enforcement and investigative authorities	Cash couriers	Statistics	Guidance and feedback	Sanctions
법집행기관과 조사당국의 권한	현금휴대반출입 관리	통계	지침과 피드백	금융회사 제재
36.	37.	38.	39.	40.
International instruments	Mutual legal assistance	Mutual legal assistance: freezing and confiscation	Extradition	Other fo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제협약의 이행	국제사법공조	국제사법공조 : 동결과 몰수	범죄인 송환	기타 국제협력

참고 4 우리나라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법체계

1.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제도

〈 국제기준 〉

- ◇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효율적으로 방지
 - 자금세탁 행위를 범죄화하고 본 범죄와 별도로 처벌
 - 자금세탁의 전제가 되는 중대범죄(전제범죄)를 지정
 -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체계를 구축
 - 금융회사 등에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부과
 - 금융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금융정보분석원 설치
- ⇒ 우리나라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으로 제도화

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1.9.27 공포)

- 자금세탁^{*}행위의 범죄화
- * 자금세탁: 특정범죄 관련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특정 중대범죄^{*}를 자금세탁 전제범죄로 규정
 - * 형법(사기, 횡령, 배임 등), 폭력행위등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정치자금법,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등
-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
- 범죄수익 은닉·가장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 신고의무
-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을 위한 국제사법 공조

②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01.9.27 공포)

-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 의심거래보고* 의무
 - *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보고
- ※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도 자금세탁으로 규정하고 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세탁이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님)
- 금융기관 등의 고객확인의무
- 고액혂금거래^{*} 보고의무
 - * 금융기관 등은 2천만원 이상 현금을 지급·영수시 FIU에 보고
- 금융정보의 누설금지^{*}
 - * FIU·법집행기관 소속 등 금융정보 취급자에게 직무상 취득한 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 또한 누구든지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
- 심사분석한 자금세탁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
- * 금융기관 등이 제공한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자금세탁의 개연성이 큰 경우 관련 정보를 8개 법집행기관에 제공
-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설립
- 금융기관 등의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검사

2. 테러자금조달금지(CFT: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제도

< 국제기준 >

- ◇ 테러자금조달을 사전적으로 금지
 - 테러자금조달 행위를 범죄화하고 처벌
 - UN지정 등 테러관련자·단체 자금의 즉시 동결
 - 테러자금을 압류·몰수
 - 금융회사 등에 테러자금조달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부과
 - 관련 국제협력 체제 구축 등
- ⇒ 우리나라는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으로 제도화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07.12.21. 공포)

-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범죄화**(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구 포함)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유형의 폭력·파괴 행위
 - ** 공중협박행위*에 이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재산
-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 지정고시 및 금융거래 등 허가*
- *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단체를 지정·고시 → 금융거래를 제한, 허가를 받은 경우 거래 가능
- 금융회사 종사자의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의 거래 취급금지^{*}
- * 허가 없이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취급 금지, 금융거래와 관련 하여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 수사기관 신고
- **공중협박자금조달 의심거래 보고의무**(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규정)

참고 5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도입 및 정착

- □ '01년 FIU 설립 이후 금융회사등 · FIU·법집행기관 간 협력에 기반한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 방지제도 도입에 주력
 -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보고→심사분석 및 정보 제공→형사 처벌'을
 중심으로 한 AML 체계의 외형적 틀을 마련
- □ FIU는 AML 체계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심사분석뿐 아니라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수행하고, 기반이 되는 **법·제도**를 정비
 -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에 상당하는 수준의 제도를 갖추어 FATF 정회원 가입('09년), 의장국 수임('15~16년) 등 국제적 위상 제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차단 제도 업무체계>

